

電氣事故의 原因과 對策

(法院判決文을 中心으로)

(6)

金 瑾 泰

大韓電氣協會 研究委員

〈附 錄〉

關係法規 條文拔萃

〈民法〉

第 752 條(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

他人의 生命을 害한 者는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에 대하여는 財産上의 損害없는 경우에도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第 756 條(使用者의 賠償責任) ①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 3 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中略……

② 使用者에 같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第 758 條(工作物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 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以下省略…….

〈刑法〉

第 9 條(刑事未成年者) 14歲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 30 條(共同正犯) 2人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第 37 條(競合犯)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수 개의 罪 또는 判決이 確定된 罪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第 38 條(競合犯의 處罰例) ① 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2. 各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の 1까지 加重하되 各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並科할 수 있다.

3. 各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的 異種의 刑인 때에는 並科한다.
② 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第 40 條(想像的 경합)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第 50 條(刑의 輕重) ① 刑의 輕重은 第 41 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징역은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금고의 長期가 有期징역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한다.

第 57 條(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① 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유치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日是 징역, 금고, 벌금이나 科料에 關한 유치 또는 구류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第 62 條(집행유예의 要件) ① 3年以下の 懲役 또는 금고의 刑을 宣告할 경우에 第 51 條(刑量의 條件)의 事項을 참작하여 그 正상에 참작할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以上 5年以下の 期間刑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但 금고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아 執行을 終了한 후 또는 執行이 免除된 후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 省略

第 164 條(現住建造物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사람의 住居에 使用하거나 사람의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毀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징역에 處한다. 이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징역에 處한다.

第 167 條(一般物件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前 3 條에 기재한 以外の 物件을 소훼하여 公共의 위험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の 징역에 처한다.

② 前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の 징역 또는 1萬 5천환 以下の

벌금에 處한다.

※ 第 3 條=現住建造物, 公共建造物, 一般建造物에의 放火

第 170 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 第 162 條 또는 第 165 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 166 條에 기재한 物件을 소훼한 者는 5萬환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省略

第 171 條(業務上 失火, 重失火)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の 금고 또는 15萬환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268 條(業務上 過失, 重過失)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の 금고 또는 5萬환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産業安全保健法〉

第 23 條(安全上의 措置) ① 事業主는 事業을 行함에 있어서 發生하는 다음 各號의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機械·器具 기타 設備에 의한 위험
2. 爆發性·發火性 및 引火性 物質 등에 의한 위험
3. 電氣·熱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事業主는 掘鑿, 採石, 荷役, 伐木, 運送, 操作, 運搬, 解體, 重量物 취급 기타 作業에 있어 不良한 作業方法 등에 起因하여 發生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事業主는 作業중 勤勞者가 墜落할 위험이 있는 場所, 土砂, 構造物등이 崩壞할 우려가 있는 場所, 物體가 落下·飛來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天災地變으로 因하여 作業遂行上 危險發生이 豫想되는 場所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安全上의 措置사항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第 26 條(作業中止등) ① 事業主는 産業災害

發生の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重大災害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作業을 중지시키고 勤勞者를 作業장소로부터 待避시키는 등 필요한 安全·保健上의 措置를 행한 후 作業을 再開하여야 한다.

② 勞働部長官은 重大火災가 발생한 경우 勤勞監督官과 關係專門家로 하여금 災害原因 調査, 安全, 保健診斷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働部長官이 정한다.

第6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 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 第1項, 第28條 第1項, 第33條 第1項, 第3項, 第4項, 第35條 第3項, 第37條, 第38條 第1項, 第46條, 第47條 第1項 또는 第52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8條 第4項, 第5項, 第48條 第4項 또는 第51條 第5項,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第6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26條 第1項, 第33條 第2項, 第34條 第2項, 第5項, 第35條 第1項, 第38條 第3項, 第43條 第1項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機械·器具 및 設備등을 사용하는 者.

3. 第34條 第4項 또는 第43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産業安全保健法施行規則〉

第342條(정전작업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 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전로와 근접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2. 省略

3.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 접지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 또는 작업종료후 개로한 전로에 통전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한 후 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消防法〉

第29條(特殊場所 등의 消防施設) ① 特殊場所의 關係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火設備, 警報設備, 避難設備, 消火用水設備, 其他 消防活動上 必要的 設備(以下 消防施設이라 한다)等 內務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② ③ 省略

第42條(消火用水施設의 指定) ① 省略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消火用水施設을 變更하거나 使用不能의 狀態에 두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電氣工事業法〉

第18條(電氣工事의 施工管理) ① 工事業者는 電氣技術者가 아닌 者에게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工事業者는 電氣工事의 規模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分에 따른 電氣技術者로 하여금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第19條(責任電氣技術者의 現場配置) 工事業者는 電氣工事의 施工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第18條 第2項의 電氣

技術者 중에서 責任電氣技術者を 指定하여 電氣工事業의 現場에 配置하고, 이를 그 電氣工事業의 都給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20 條(電氣技術者の 職務) 電氣技術者は 電氣工事業에 따른 危險 및 障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法 및 기타의 法令에 적합하게 電氣工事業을 施工管理하여야 한다.

〈電氣事業法〉

第 46 條(電氣安全管理擔當者 등의 義務) 電氣安全管理擔當者は 安全管理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 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그 從業員은 電氣安全管理擔當者の 安全管理에 관한 의견 또는 指示에 따라야 한다.

②, ③ 省略

〈電氣設備技術基準에 關한 規則〉

第 13 條(전선의 접속법)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 251 조 또는 제 2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세기(인장 하중으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를 20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할 것. 다만, 가공 전선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절연 전선 상호, 절연 전선과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 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단면적이 8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을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 피복을 완전히 유화하거나 접속 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 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 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호를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5. 省略

第 24 條(고압 또는 특별 고압과 저압의 혼속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① 고압 전로 또는 특별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 25 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 2 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만 5천볼트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 및 제 143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오옴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의 경우에 당해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

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에서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mm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 접지선을 제 74 조 제 2 항, 제 75 조, 제 79 조, 제 83 조 내지 제 88 조 (제 85 조 제 2 항 제 4 호 및 동조 제 3 항 제 2 호를 제외한다) 및 제 91 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미터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③ 제 1 항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 공동 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 장소에 공통의 제 2 종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 공동 지선은 지름 3.5mm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제 74 조 제 2 항, 제 75 조, 제 79 조, 제 83 조 내지 제 88 조(제 85 조 제 2 항 제 4 호 및 동조 제 3 항 제 2 호를 제외한다) 및 제 91 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 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안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직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측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 장소에서 접지 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 공동 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안마다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제 2 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할 것.

④ 중성점 접지식 고압 가공 전선로와 저압 전선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 제 1 항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 공동 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 장소에 공통의 제 2 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 공동 지선은 제 3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할 것

2. 접지 공사는 제 3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할 것. 다만, 동일 지지물에 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각 접지 장소에서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의하여 300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가공 공동 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제 2 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 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300Ω을 넘는 경우에는 300Ω 이하)으로 할 것

$$R = \frac{150n}{I}$$

R는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저항(오옴을 단위로 한다)

I는 제 19 조 제 3 항의 1선지락 전류(암페어를 단위로 한다)

n는 접지의 장소 수

⑤ 제 3 항 및 제 4 항의 가공 공동 지선에는 지름 3.5mm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이나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 전선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⑥ 직류단선식 전기 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의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58 條(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①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5만 볼트를 넘는 특별 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엔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가 당해 변전소에서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변전소(변전소에 시설하는 전로를 분할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전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 전압이 10만볼트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당해 변전소 또는 그 구외에 있는 기술원 주재소의 어느 곳이나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2. 사용 전압이 10만볼트를 넘고 17만볼트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당해 변전소 또는 이로부터 300m안에 있는 기술원 주재소의 어느 곳이나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3. 4. 省略
- ②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2. 省略
3. 수소 냉각식의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에 있어서는 당해 조상기내의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당해 조상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以下 省略

第 182 條(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①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내면

에너지 바로쓰기

■ 建 物 部 門 ■

○ 사무실 照度의 자동관리

— 사무실의 전기節約을 위해 일부 照明燈을 消燈함으로써 업무능률의 저하, 시력악화 등을 유발



— 사무실 基準照度에 알맞도록 조정된 자동照度管理시스템을 導入하여 적정조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전기도 절감

○ 대형건물의 換氣量 조절

— 冬節期 대형 사무실 건물, 호텔, 병원 등의 換氣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適當量을 실시함으로써 난방 에너지가 增加됨



— 실내의 空氣汚染度를 자동측정하여 換氣量 및 換氣回收를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環境유지는 물론 난방 에너지 감소시킴

전부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이 400볼트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에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는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第 183 條(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기계 기구 등의 시설) ①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 스탠드·휴대등 및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동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온로 등 그 충전 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 부분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 전기 기계 기구(배선기구·백열전등·방전등 및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 이외의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전기 용접기·전동기·전해조나 전격 살충기로서 그 충전 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 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④ 省略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백열전등·방전등·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

및 업무용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187 條(분기 회로의 시설) ①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 사용 기계 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55퍼센트(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미터를 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以下省略

第 189 條(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 방법의 예외) ①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 1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87 조 제 1 항 제 2 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 전압이 400볼트 이하인 저압 2선식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 187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14 조 제 9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저압의 다선식 옥내 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 187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14 조 제 9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87 조 제 1 항 제 2 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는 식별이 용이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연재 끝)